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 롤리
계절 결정 근로자들에게 통지

에서 수행하는 작업

상기 고용자는 취직보증법에 따라 계절대로 작업 분리하는 것을 요청했다. 소개된 사실을 조사해서 취직보증과는 고용자가 계절때문에 생산운영을 매년 정기적으로 되풀이하는 36 주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취직보증과는 작업을 계절대로 분리해서 _____부터 _____까지 계속하는 기간에 수행하다고 규정했다.

본 결정은 _____에 적용된다.

계절의 작업을 해서 기준시기 임금의 25%만큼 버는 아무 노동자는 계절노동자라고 한다. 그런 임금은 '계절임금'이라고 한다. 그 노동자는 비수기동안 일하거나 기준시기동안 다른 고용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해서 임금을 받는 권리도 있다. 계절임금에 근거를 둔 실업 보험 수당은 계절 주기에만 받을 수 있다. 계절임금이 아닌 임금에 근거를 둔 수당은 비수기에도 받을 수 있고 계절임금이 소진된 후에 계절 주기에도 받을 수 있다. (N.C.G.S. 96-16 (e) 또는 (f))

상기 고용자로 고용된 아무 노동자는 본 결정을 그 노동자에 적용하는 것이 실수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된 항의서를 제 1 계절 주기의 시작부터 10 일내에 취직보증과에 제출할 수 있고 소개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아무 항의서를 North Carolina 상무부 취직보증과에 P.O. Box 25903 Raleigh, North Carolina 27611 주소로 보내야 된다.

본 결정은 취직보증과로 개정하기 전에 유효하다.

North Carolina 상무부
취직보증과

날짜 _____
NCUI 543 (Rev 05-98)

특별지원